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4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4월 4일

3. 제안이유

-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림내 입목의 우리도 지분 수익 분배금을 적립금으로 운영하여, 공유림 확대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분수림설정 수익금의 적립규정 신설 (제35조의2 제2항)
 - 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.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 국유림 내 입목의 수익분배금을 적립하여 도유림 매입에 사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나,

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제도(산림법 제88조)가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어 법률 제6382호(2001. 1. 26)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

동 조례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사유와,

동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2(분수림 설정)를 제시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